

# 변호사 김남훈이 추천하는 민사법 공부방법론

## I. 민사법 출제 경향에 대한 총평

민사법은 선택형 70문제(175점), 사례형 350점, 기록형 175점 분량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11회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공통점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적 쟁점에 대하여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정확한 결론을 빨리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도 11회를 거치면서 상당한 진화를 하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갖추었습니다.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의 전 영역에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쟁점들이 출제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말 그대로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사실체법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을 반드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만 멀리 내다본다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므로,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들을 지금부터 체득하여, 미래를 꿈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II. 선택형 문제에 대한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

### 1. 출제경향

선택형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판례와 민사법의 중요쟁점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 및 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문이 긴 사례형 및 계산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난이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하기 어려운 지문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즉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지문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수준 높은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소, 제3자이의의 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가압류와 가치분,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등과 같이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판례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2. 공부방법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해서는 선택형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요건사실론을 포함한 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중요한 판례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택형에서 출제되었던 민사집행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판례가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심화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방대한 공부량을 고려할 때, 선택형의 공부방법은 효율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여 정리한 후에, 김남훈 변호사가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 기타 시험에 출제된 문제 · 최신 판례를 지문으로 구성한 문제들로 편제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 III. 사례형 문제에 대한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

#### 1. 출제경향

사례형 문제는 중요한 판례 위주로 구성되어 높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실무 기록을 사례형으로 변형하여 출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편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기압류의 신청 및 취소 등 민사집행법의 중요 내용을 묻는 설문도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는 쟁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잘 이해하여 판례가 아직 판시하지 않은 관련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풀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례가 있는 사안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출제경향도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 2. 공부방법

사례형 문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쟁점에 대하여 결론과 이유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을 키워드 위주로 답안에 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의 모든 쟁점을 스크린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판례의 법리에 근거를 둔 압축된 문장으로 결론을 서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키워드를 철저하게 암기하여 딥안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과 민소법의 통합문제 뿐만이 아니라, 상법까지 연결된 문제가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합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민법의 채권양도, 민사집행법의 전부명령, 상법의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고, 주주대표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는 문제가 민사소송법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통합형 공부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 IV. 기록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 및 공부방법론

#### 1. 출제경향

기록형 문제는 실무가들만이 출제하고 채점할 수 있다는 시험의 특성상 당연히 민사재판실무의 쟁점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면에서도 변별력을 갖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좋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2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전단적 대표행위’ 가, 제3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영업양도’ 가, 제5회 변

호사 시험에서는 ‘표현대표이사와 백지어음’ 이, 제6회 시험에서는 ‘대표소송’ 이, 제7회 시험에서는 ‘주주총회취소결의소송’ 이, 제11회 시험에서는 ‘주주권확인’ 이 출제되었으므로, 기록형 문제에서도 회사법과 어음법의 쟁점까지 포함된 진정한 통합형 문제가 출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제4회 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81조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쟁점과,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에 대한 말소’에 대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제5회 시험에서는 ‘추심명령’의 쟁점이 출제되었고, ‘보전처분의 법리’를 이해해야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제6회 시험에서는 ‘압류 경합시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명령은 유효’라는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제7회 시험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와 ‘전부명령’의 법리가 출제되었습니다. 제8회 시험에서도 ‘전부명령’의 법리가 다시 출제되었고, 제9회 시험에서는 추심명령의 법리가 출제되고, 제10회 시험에서는 압류경합과 전부명령의 쟁점이 출제되었고, 제11회 시험에서는 전부명령이 출제되었습니다.

## 2. 공부방법

기록형 대비를 위해서는 우선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원인도 요건사실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분쟁유형별로 기본적인 요건사실을 암기해야 합니다. 중요 분쟁유형에 대한 요건사실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어야 기록을 보면서 원고의 주장을 누락 없이 정리하고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 문제의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에 비추어,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내용을 기록형 대비로 학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메모법을 체득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기록형은 작성시간이 3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할수록 답안작성 연습을 할 심리적·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최소한 매주 1회 정도 실전형 답안작성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 V. 제12회 이후 변호사시험에 대한 출제예상 및 공부방법

판례 중심의 통합형 쟁점의 출제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나이도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법리를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선택형의 부담을 줄이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형 대비로 두꺼운 문제집을 택하지 말고, 11년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김남훈 변호사가 편제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등의 실무과목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험의 특성상 시간을 절약하는 공부 방법을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판례를 이해한 후에는 그 판례가 선택형에서는 어느 부분이 변형되어 출제되는지를 검토하고, 사례형에서는 답안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판례의 법리를 서술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기록형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판례에 근거하여 어

떠한 방식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통합형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VII. 맷음말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쟁점은 모두 김남훈 변호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 상법 4번은 위법배당에 관한 문제인데, 수험가에서 저를 제외한 모든 강사들이 이 문제를 불의타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1순환 강의 때부터 위법배당에서 그 부분은 출제가능성이 있으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10회 기록형 문제에서는 연대채무의 일부면제에 대한 최신판례를 기초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사례가 급액까지 정확하게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11회 시험을 위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기출된 쟁점 중에서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선별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쟁점과, 민법에서 상속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의 쟁점을 출제하였고, 이 쟁점들이 11회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처럼 김남훈 변호사가 매년 변호사 시험 문제 중에서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에서 90% 이상을 적중할 수 있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 교재 · 기록 · 강의내용과, 각종 민사법 학회 · 세미나의 토의 내용 및 발표 논문 등을 종합하여 출제위원인 실무가와 교수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5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의 자격에서 변호사 시험의 출제과정을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예년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의 민사법의 모든 과목과 모든 영역에서 90% 이상을 적중을 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하나의 쟁점이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에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까지 동시에 강의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하게 교재와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에 변호사가 된 이후에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전부 체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재와 강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